



12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 보고

제106회기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이성택
서 기 임근식

1. 조직

- 위 원 장 : 이성택
- 서 기 : 임근식
- 총 무 : 정판술
- 부위원장 : 임재룡
- 회 계 : 한복용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12. 2(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위원장 : 이성택 목사 부위원장 : 임재룡 목사

서 기 : 임근식 목사 총무 : 정판술 목사 회계 : 한복용 장로

② 차기 회의는 2022년 2월 7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22. 2. 7(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부목사노회투표권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하기로 하다.

1) 타 교단 부목사 투표권에 헌법 내용 파악

2) 예정 합동 헌법 내용 파악

3) 부목사 투표권에 관한 지역 정서 파악

4) 제106회 현의안을 연구하여 차기 회의 각 위원들이 발표하기로 하다.

② 차기 회의는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22. 4.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타교단(통합측) 부목사 노회 정회원 자격의 건 조사 결과.

「헌법 11장 74조 1항 노회원의 자격」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목사, 선교 목사, 선교 동역자,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단,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29] 부목사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후 부목사 노회 투표권 연구방향에 참조하기로 하다.

- ② 본 교단 산하 노회에서는 현재 부목사에게 노회원 자격 및 투표권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하고 차후 연구방향에 참조하기로 하다.
- ③ 부목사 노회 투표권에 관한 토의를 차기 회의에서 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22. 6. 23(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본 교단 헌법 제4장 4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나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 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의거 부목사가 교회에서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부목사도 시무 목사이기에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있기에 투표권도 있다. (단, 피선거권은 없다).

- ② 차기 회의는 7월 18일(월)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고, 제107회 총회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2. 7.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부목사노회투표권은 헌법정치 제4장 4조 3항에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나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의거 하여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 ② 최종보고서 및 청원서는 차기회의에서 결하기로 하다.
- ③ 차기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 대전역 에서 모이기로 하다

(5) 제6차 회의

☞ 일 시 : 2022. 7. 27(수) 10:00

☞ 장 소 : 대전역

☞ 결의사항

- ① 부목사노회 투표권 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별지로 받기로 하다.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6회 총회 수입사항

목포서노회에서 현의한(문서번호 목서노 제131-89) “부목사노회투표권 당회파송 장로의 동일 숫자 파송제한의 건”을 연구 토록함.

2. 최종결론

1) 부목사 노회 투표권은 정치4장 4조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의거하여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결의

제96회 총회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현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제97회 총회 “부목사 정회원권 관련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현의한 부목사의 노회상에서의 정회원권 행사에 대한 총회 지도의 건은 제96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3) 목포서노회에서 현의한(문서번호 목서노 제131-89호) “부목사노회 투표권 당회 파송 장로의 동일 숫자 파송제한의 건”에 대해서는 본 총회 헌법으로 적용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신분과 권익에 대해서는 헌법 및 총회결의에 준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본 연구위원회를 보고를 드립니다.